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이정봉
전화 062-231-4332 / 팩스 0502-193-7661

보도자료
2021. 8. 30.(월)

제 목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건 수사결과** - 관리책 등 조직원 9명 추가 적발, 총 12명 기소(4명 구속)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제11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3호)
 -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0조 제2항)
 - ☑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0조 제3항)

※ 2021. 8. 27. 개최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

-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검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수사하여, 총 12명을 기소(구속 4명, 불구속 8명)하고, 2명을 기소중지 하였음
- 본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1명에 대한 사경 불구속 송치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행 부인하는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을 확인, 관련 공범 사건 취합하여 전면적인 재수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국적 동포를 총책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밝혀 피해금액을 규명하고, 조직원 9명을 추가로 밝혀 엄단한 사안임
 - '21. 7. 8.(목) 본건 범죄단체 조직원 2명을 구속 기소한 이후, 관련 공범 조사 등을 통해 조직원 9명의 범행 가담 사실 새롭게 밝혀 인지, 그 중 관리책 2명을 추가 구속
- 광주지검은 향후 사경 송치 사건도 면밀히 보완 수사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 특히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음

I 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A, B, C(각 관리책)는,
 - '17. 3. 중국국적 동포를 총책으로 하는 보이스포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 '17. 3.~10. 수사관 사칭 조직원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라고 거짓말한 뒤 허위 검찰청 공문을 보내주거나 허위 검찰청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하여 접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믿게 한 다음 검사 사칭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주고,
 - 검사 사칭 조직원은 “현재 당신을 수사 중이다, 범죄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9,000만 원 상당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사기미수]**

구체적인 범행수법

- ✓ 네이버 등 인터넷에서 검사, 수사관 이름 검색 후 사칭
- ✓ 피해자에게 허위 검찰청 공문 발송하거나, 허위 검찰청 홈페이지 안내
- ✓ 경력이 많은 조직원이 검사 사칭 역할을 담당하며, 신규 조직원 상대로 수사관 역할 교육
- ✓ 먼저 범행을 시작한 조직원이 친구, 후배 등 지인을 조직원으로 영입(조폭도 가담)
- ✓ 가명 사용, 중국 유심칩 및 '위챗' 메신저 사용으로 수사기관 추적 회피

※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는 별첨 표 참조

II 주요 수사 경과

- '21. 5. 21. 당청 기소중지 피의자 M 조사 중 본건 보이스포싱 조직의 실체 확인
- '21. 6. 1. 기 종결된 공범사건 검토 등 재수사 착수
- '21. 6. 24. A, E('20. 12. 타 청 혐의없음 처분) 2명 직구속 / 7. 8. 구속 기소
- '21. 8. 9. C, D, F, G, H, I, J, K, L 등 조직원 9명 인지
- '21. 8. 12. 가담정도 중한 C, D 2명 추가 직구속
- '21. 8. 30. B 등 10명 기소, 2명 기소중지

- 본건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부인하여 피해금원 특정 없이 사기미수 등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피의자 변소의 모순점을 확인, 공범 수사·처분 내역 확인하여 전국 6개 청에 흩어져 있던 관련사건을 검토·취합(혐의 없음 처분 사건은 재기)한 뒤 전면적인 재수사 실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밝힌 사안임
 - 수사 결과, 최초 수사과정에서 도주하여 수사망을 벗어난 공범 9명의 존재와 신원을 밝혀 추가 인지 후 가담정도 중한 2명을 구속하는 등 전원을 엄단 (이번 수사를 통해 조직 관리책 2명, 상담원 2명 총 4명 구속)
 - 아울러 본건 피고인들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최대한 환수하겠음
 - 광주지검은 향후에도 사경 송치사건을 면밀히 보완 수사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 특히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음
-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21. 7.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하고, 중국公安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중국에 체류 중인 총책 등 검거, 즉시 송환 적극 추진 중 ☑

※ 별첨 : 피고인(피의자)별 공소사실(피의사실) 및 처분내역

순번	피고인(피의자) 및 직위	공소사실(피의사실) 요지	처분
1	A(28세), 관리책	'17. 3.~10. 범단가입·활동, 사기, 사기미수	21. 7. 8. 구속 기소
2	B(28세), 관리책	'17. 3.~10. 범단가입·활동, 사기, 사기미수	21. 8. 30. 불구속 기소 (별건 수감 중)
3	C(29세), 관리책	'17. 3.~10. 범단가입·활동, 사기, 사기미수	21. 8. 30. 구속 기소 (8. 9. 인지)
4	D(26세), 상담원	'17. 3.~9. 범단가입·활동, 사기, 사기미수	21. 8. 30. 구속 기소 (8. 9. 인지)
5	E(29세), 상담원	'17. 8.~10. 범단가입·활동, 사기, 사기미수	21. 7. 8. 구속 기소
6	F(24세, 조폭), 상담원 ※ 구속영장 발부 (도주)	'17. 5.~10. 범단가입·활동, 사기, 사기미수	21. 8. 30. 기소중지 (8. 9. 인지)
7	G(23세), 상담원 ※ 구속영장 발부 (도주)	'17. 5.~7. 범단가입·활동	21. 8. 30. 기소중지 (8. 9. 인지)
8	H(24세), 상담원	'17. 8.~10. 범단가입·활동, 사기, 사기미수	21. 8. 30. 불구속 기소 (8. 9. 인지)
9	I(25세), 상담원	'17. 8.~10. 범단가입·활동, 사기, 사기미수	21. 8. 30. 불구속 기소 (8. 9. 인지)
10	J(25세), 상담원	'17. 4.~6. 범단가입·활동	21. 8. 30. 불구속 기소 (8. 9. 인지)
11	K(27세), 상담원	'17. 6.~9. 범단가입·활동, 사기, 사기미수	21. 8. 30. 불구속 기소 (8. 9. 인지)
12	L(24세), 상담원	'17. 8.~10. 범단가입·활동, 사기, 사기미수	21. 8. 30. 불구속 기소 (8. 9. 인지)
13	M(27세), 상담원	'17. 6.~10. 범단가입·활동, 사기, 사기미수	21. 8. 30. 불구속 기소
14	N(32세), 상담원	'17. 10. 범단가입·활동, 사기	21. 8. 30. 불구속 기소